



미국 세제개편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

이혜은 연구원

2017년 12월 22일 미국 세제개편 법안(Tax Cuts and Jobs Act)이 확정되면서 개인,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, 다국적 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준비금의 계산, 미상각신계약비(Deferred Acquisition Costs), 이월결손금(Net Operating Loss), 배당금 공제 등에 영향을 미침.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세원잠식방지세(Base Erosion Anti-Abuse Tax)의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

- 2017년 12월 22일 미국 세제개편 법안(Tax Cuts and Jobs Act)이 확정되면서 개인,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, 다국적 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⁾
 - 주요 내용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대규모 감세,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 개편, 다국적 기업의 소득 국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임
 - 미국의 연방법인세가 현재 최고 35%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21%의 단일세율 구조로 변경되며, 법인에 대한 최저세제²⁾ 규정도 폐지되어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
-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준비금의 계산, 미상각신계약비(Deferred Acquisition Costs), 이월결손금(Net Operating Loss), 배당금 공제 등에 영향을 미침
 - 생명보험회사의 세법상 책임준비금(tax reserve)³⁾은 NAIC가 정한 준비금의 92.81%와 해약환급

1) A.M, Best(2017), "First Look-Tax Reform 2017"; Deloitte(2018), "US tax reform Impact on Insurance companies"

2) Alternative minimum tax, 공제 및 감면으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

3) NAIC의 감독관식 책임준비금에 대응하여 미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준비금을 말함

- 금 중에서 큰 값이 될 것이며, 이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수 없으며 법정준비금보다 클 수 없음
 - 신계약비용을 자본화하여 상각해야 하는 미상각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으며, 상각비율은 연금보험 1.75% → 2.09%, 단체보험 2.05% → 2.45%, 그 이외의 보험 7.70% → 9.20%로 기존보다 대략 20% 증가함
 - 이로 인해 과세소득(taxable income)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20%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의 배당금은 기존 80%에서 65%로, 20% 미만 지분을 소유한 경우의 배당금은 70%에서 50%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됨
 - 현재까지 3년 소급공제(carryback)와 15년 이월공제(carryforward)가 적용되던 이월결손금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월공제만 가능하며, 과거 별도의 한도 없이 공제되던 이월결손금은 향후 해당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80% 한도로 하여 공제됨
 - 이러한 변화로 생명보험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감소하고 총조정자본(Total Adjusted Capital)과 RBC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손해보험회사는 세법상 지급준비금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규정한 손해지급유형(Loss Payout Pattern)을 사용해야 하며, 할인율도 고수익 회사채 금리를 사용해야 함
- 또한 일반배상책임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금 지급기간이 긴(long-tail)종목은 할인기간을 10년에서 24년으로 연장함
 - 손해보험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생명보험회사와 달리 현재와 마찬가지로 2년 소급공제(carryback)와 20년 이월공제(carryforward)가 적용됨
-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세원잠식방지세(Base Erosion Anti-Abuse Tax)⁴⁾의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
- 미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미국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본사에 송금할 때 2018년에는 송금액의 5%, 2019년에는 10%, 2026년에는 12.5%를 세원잠식방지세로 부담해야 함
 - 따라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보험상품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**kiri**

4) 과세표준에 부과된 21% 법인세액과 조정과세표준(과세표준 + 해외관계사 지급액)에 부과된 10%(2018년 5%, 2019년 10%, 2026년 이후 12.5%) 중 더 큰 세액을 과세함